##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88 제출연월일 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호 중 "종자"를 "종자, 배양체"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사업) 생물자원관은 다음	제5조(사업)		
각 호의 사업을 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유전자원, 천연물, <u>종자</u> 등 생	2 <u>종</u> 자, 배양		
물자원 소재의 확보·배양 및	<u>체</u>		
제공			
3. ~ 12. (생 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		
제8조(임원 및 직원) ① ~ ④ (생	제8조(임원 및 직원) ① ~ ④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	⑤		
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<u>기획</u>	<u>환경</u>		
<u>재정부장관</u> 이 임명한다.	<u> 부장관</u>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